

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		
정	수	과

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4. . .
발 의 자	김재우 의원 외 12인

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4. . .

발 의 자: 김재우·김근한·김낙관·김민성
김원섭·김정도·박교상·신용하
양진오·이정희·이지연·정지원
추은희 의원(13인)

1. 제안이유

금고 운영의 보고,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일비 및 여비 등의 지급과 관련된 근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의무 추가(안 제12조제1항)
- 나. 금고 재무건전성 관련 금고은행 보고 의무 추가(안 제12조제3항)
- 다. 일비 및 여비 등의 지급 근거 조례 정비(안 제13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

2)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

3)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8조

나. 부서검토: 징수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금고 지정 평가기준)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

우에는 별표의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평가보고”를 “평가보고,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어 시장이 금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 중 “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제13조(일비 및 여비등의 지급) 시 의원,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일비,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u>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 다.</u></p> <p>제13조(일비 및 여비등의 지급) - ----- -----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-- -----.</p>
--	-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회계법」

제38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
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제48조(금고 업무의 약정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

2. 주민의 이용 편의

3. 금융기관의 재무구조

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”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
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
2.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
3.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: 징수과

조 례 명	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거 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▪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▪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8조▪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(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, 2019.5.9.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금고의 평가기준을 별표에 따르도록 함(안 제4조)○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의무 추가(안 제12조제1항)○ 금고 재무건전성 악화 등 보고 의무 추가(안 제12조제3항)○ 일비 및 여비 등의 지급 근거 조례 정비(안 제13조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금고지정시 평가기준을 별표에 따르도록 조문 간소화○ 금고운용 보고(안 제12조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도록 보고 의무 추가▪ 재무건전성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·감독 강화○ 타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대효과: 시금고의 운용보고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 확보○ 소요예산: 해당없음	